

인공지능법 관련 인권시민단체 의견서 답변내용

(‘23.4.26, 인공지능기반정책과)

①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내용이 유사한 인공지능법의 중복 제정에 반대

○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 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한 법입니다.

- 특히, 개별 지능정보기술(데이터·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의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이 이미 제정·시행 중에 있으며,

* 데이터(데이터산업법), 클라우드(클라우드컴퓨팅법), 네트워크(전기통신사업법) 분야 특별법 기 제정

- 인공지능법도 인공지능에 특화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내용 상 구별됩니다.

* 인공지능 기술개발, 학습용데이터 구축 등 산업육성 근거와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대상(고위험영역 AI) 사전고지의무,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제내용을 명시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는 것에 반대

④ 인공지능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규제 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음

- 인공지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인공지능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즉, 다른 기관 소관의 개인정보, 인권, 안전 등에 관한 규율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과 사회정책 일반을 소관하거나, 인공지능위원회의 결정이 다른 규제 기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사회(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제11조)에 반대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은 기본적으로 초기 시장인 AI 개발, 생태계, 환경 등에 대한 일반론을 다루고 있는 조항입니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에도 동일한 내용이 규정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제31조(규제 개선 등) ① 누구든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제공·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제공·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인공지능법에서는 인공지능으로 우려되는 **피해나 위험성은 윤리** (제23조), **검·인증**(제25조), **이용자 고지 의무**(제27조), **신뢰성 확보 조치**(제28조) 등을 통해 방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⑥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가 자의적이고 부분적임

- 인공지능법 상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

제2조 제3호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 가. 에너지, 먹는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나.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다.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라.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마. 범죄 수사, 체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를 분석·활용하는 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 사.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 아. 공공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 자.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정의에 의료기기(다목), 원자력안전(라목) 등 **EU 법안에서 규율하지 않는 대상도 포함하고 있으며,**
- AI 발전 및 적용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법안에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필요 시 대통령령을 통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⑥ 고위험 시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로 위험방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인공지능법 대안의 규제대상 및 내용은 정필모·윤영찬·이용빈·윤두현 의원안 등 7개 법안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및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로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조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편, EU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하여 강도 높은 규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EU 이사회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수정의견을 제시('22.12.6)한 상황입니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제27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 고지 의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하 "신뢰성 확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뢰성 확보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해 학습된 데이터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
4. 이용자 보호 방안
5.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